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임금 단가표

(제111조제1항, 제112조, 제113조의3제1항, 제114조, 제119조, 제119조의2, 제119조의3, 제119조의4 관련)

(단위: 원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구 분</td><td colspan="10">우정실무원</td><td rowspan="2">특수지계약
집배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전일제</td><td colspan="5">시간제</td></tr>
<tr><td>일급
(시간급)</td><td colspan="5">- 일급 51,760</td><td colspan="5">- 시간급 6,470</td><td>- 전일제(일급) 51,760
- 시간제(시간급) 6,470</td></tr>
<tr><td>가족수당
(월 기준)</td><td colspan="11">- 배우자 40,000, 직계비속 20,000
- 3자녀이상 가산금 80,000(2013. 1. 1. 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적용)
※ 특별소통 등 1개월 미만 한시적 채용인력 제외</td></tr>
<tr><td>명절보로금
(연2회)</td><td colspan="5">150,000
(1년이상 계속 근로자)</td><td colspan="5">100,000
(1년이상 계속 근로자)</td><td>150,000</td></tr>
<tr><td>직무수당
(월 기준)</td><td colspan="5">[우편물소통특별수당]
- (우체국) 20,000
- (집중국) 30,000 ~ 100,000
※ 우편물구분업무 限(집중국 계약등기보조 포함)
※ 특별소통 등 1개월 미만 한시적 채용인력 제외</td><td colspan="5">- 전일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※ 우편물구분업무 限(집중국 계약등기보조 포함)
※ 특별소통 등 1개월 미만 한시적 채용인력 제외</td><td>[특수지집배특별수당]
- (전일제) 60,000
- (시간제) 일급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근속수당
(월 기준)</td><td>1년
이상</td><td>2년
이상</td><td>3년
이상</td><td>4년
이상</td><td>5년
이상</td><td>6년
이상</td><td>7년
이상</td><td>8년
이상</td><td>9년
이상</td><td>10년
이상</td><td>11년
이상</td><td>12년
이상</td><td>13년
이상</td><td>14년
이상</td><td>15년
이상</td></tr>
<tr><td>1만원</td><td>2만원</td><td>3만원</td><td>4만원</td><td>5만원</td><td>6만원</td><td>7만원</td><td>8만원</td><td>9만원</td><td>10만원</td><td>11만원</td><td>12만원</td><td>13만원</td><td>14만원</td><td>15만원</td></tr>
<tr><td>연장
근로수당</td><td colspan="11">- [일급제] {(일급/8)+((직무수당+근속수당)/209)×1.5
- [시간급제] {시간급+((직무수당+근속수당)/월통상근로시간)}×1.5</td></tr>
<tr><td>휴일
근로수당</td><td colspan="11">- [일급제] {(일급/8)+((직무수당+근속수당)/209)}×8×1.5
- [시간급제] {시간급+((직무수당+근속수당)/월통상근로시간)}×일근로시간×1.5</td></tr>
<tr><td>야간
근로수당</td><td colspan="11">- [일급제] [(일급×1.5)+{((직무수당+근속수당)/209)×8×0.5}]
- [시간급제] [(시간급×일근로시간×1.5)+{((직무수당+근속수당)/월통상근로시간)×일근로시간×0.5}]</td></tr>
<tr><td>상시출장비</td><td colspan="5">-</td><td colspan="5">-</td><td>1일 4시간 이상 6,000원
4시간 미만 3,000원</td></tr>
</table>